



## 미국의 문화재 보호법제

정보신청기관 : 문화재청 정책과

### I. 들어가는 말

문화적 유산은 인간성의 표징이며 문명의 정체성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한 가지이다.<sup>1)</sup> 미국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찍이 1906년 본격적으로 ‘유물법(Antiquities Act)’을 제정함으로써 기초를 놓았고, 그 이후 ‘유적지 법(the Historic Sites Act),’ ‘국가유적보존법(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고고학적 자원법(Archaeological Resources Act)’을 제정함으로써 그 보호를 보완, 확대하고 강화시켰다. 이에 더하여 ‘1970년 유네스코 협약’에 수정을 가하여 가입하였고 1983년 본 유네스코 협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1983년 ‘문화재 협약 이행법(The Convention of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을 제정하여 일정한 국제적 요구

에 응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 방재와 관련해서는 타 사범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관련 전문가협회가 꾸준히 개발해 내는 모델법 또는 모델코드를 관련 공사기관들이 채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재보호 및 관리에 과학기술의 적용을 시도하여 그 보호를 계속 강화한다는 점이다.

한편, 국제교류가 활발한 현재, 국가간의 문화재 이동은 어떤 시기보다도 활발하다. 따라서 국내적 문화재보호입법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화재 보호입법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문화재 보호관련 행정기관, 보호입법례를 살펴보고, 국제 문화재관련 주요 협약과 미국내 문화재 화재 방재관련 기관을 알아보기로 한다.



1) Joshua M. Zelig, Recovering Iraq’s cultural property: what can be done to prevent illicit trafficking, 31 Brook. J. Int’l L. 289, 322 (2005).

## II. 미 문화재 보호의 연혁

미국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노력은 생각보다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비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은 1966년까지는 없었지만, 19세기초반부터 여러 입법안 제출 등을 통한 보존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었다. 보존운동의 초기형태 중의 하나는 마운트 버논(Mount Vernon)의 1850년대 조지 워싱턴의 집이 유기상태에 처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때 조지 워싱턴의 조카는 그 집을 연방정부에 20만불에 매도하고자 시도했었으나 결국 아무도 사지는 않았다. 그 집이 더 이상 휴양지로 되어버리거나 방치되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앤 파멜라 커닝햄(Ann Pamela Cunningham)은 '마운트 버논 부인들의 연합(Mount Vernon Ladies' Association)'을 만들어 이 집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다. 보존노력을 증대하고자 한 이 최초의 모임이후, 그들은 이 집이 폐허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집을 매수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였고, 결국 그 여성들의 노력으로 그 집은 미국 국가와 독립의 탄생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보존단체들의 청사진으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 1906년에는 미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공유지로부터 내무부 장관(Secretary of Interior)의 허가없이 유물굴착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유물법(Antiquities Act)'을 제정하였다. 본 법은 미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특정 공유지를 국립기념지역(물)(National Monument)

로 지정할 권한을 주었고, 이로써 도굴꾼으로부터 유적지와 유물을 보호하게 되었다. 1916년에는 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에 의한 '국립공원서비스부(National Park Service)'의 창설, 1935년 유적지법(Historic Sites Act), 1949년 '유적보존을 위한 국가신탁법(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Act)' 그리고, 1966년에는 방대한 종합적인 보호절차법률인 '국가유적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으로 체계가 분명히 잡히게 되었다.

미 문화재 보호에 관한 주요 입법과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 보호관련기관

- 국립공원서비스부(National Park Service)
- 미 고고학 협회(The Archae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 유적보존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 주 유적보존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 미 국무성(Department of State)
- '보존기술 및 훈련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Preservation Technology & Training)'

### 문화재보호관련법

- 1906년 유물법(Antiquities Act)<sup>2)</sup>
- 1935년 유적지법(Historic Sites Act)<sup>3)</sup>
- 1949년 유적보존을 위한 국가신탁법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Act)<sup>4)</sup>

- 1966년 국가유적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sup>5)</sup>
- 1979년 고고학적 자원법 (Archaeological Resources Act)<sup>6)</sup>
- 1983년 문화재 협약 이행법(The Convention of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sup>7)</sup>

#### 기타 문화재 보호 관련 제도

- 유적지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 섹션 106조 검토 프로세스(Section 106 review Process)

Monuments; reservation of lands; relinquishment of private claims)

- 16 U.S.A. § 431a. 와이오밍 주에서의 추가적 국가적 기념지선정이나 확장에 대한 제한(Limitation on further extension or establishment of national monuments in Wyoming)
- 16 U.S.A. § 431. 유적지 조사, 채굴, 유물수집에 대한 허가; 규칙(permits to examine ruins, excavations, and gathering of objects; regulations)
- 16 U.S.A. § 433. 미국 유적유물(American antiquities)

### III. 주요 문화재 보호입법

#### 1. 1906년 유물법(Antiquities Act)<sup>8)</sup>

본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16 U.S.A. § 431. 국가적 기념지(물); 토지보존; 사적 청구권의 포기(National

100여년전 미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보존주의 신념에 따라 미 고대유물의 보존을 위한 법에 서명을 하였다. 본 법은 대통령에게 고대유물 등의 가치를 지닌 일정한 공유지를 국회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이나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지정지역은 국립기념지역(물)(Natio-



2) 16 U.S.C. 431 - 433

3) 16 U.S.C. 461 - 467.

4) 16 U.S.C. 468.

5) 16 U.S.C. 470 - 470x.

6) 16 U.S.C. 470aa - 470mm.

7) 19 U.S.C. 2601 - 2613.

8) <http://www.archaeology.org/antiquitiesact/>.

nal Monument)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다.

본법 섹션 1조(16 U.S.C.A. § 433)에서 연방문화재산에 대한 파괴행위와 약탈행위를 다루고 미 정부소유지에서 어떤 역사적 선사적 유적이거나 기념물 또는 유물을 개인적으로 전용하거나, 도굴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섹션 2조(16 U.S.C.A. §431)에서 미 대통령에게 그의 재량하에 특정 미연방소유지를 국가적 기념물로 지정할 일방적인 권한을 주어, 문화보존지역상 사냥이나 방목행위, 광물채굴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 공유지 사용에 관하여 의회 검토없이 직접 집행명령(executive order)으로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섹션 3조(16 U.S.C.A. §432)에서는 지정지역에서의 유적지 검사, 고고학적 지역에 대한 굴착행위, 유물 등의 수집행위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본 법은 미국내 보전 및 보존정책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는 아직도 미치고 있다.<sup>9)</sup> 구체적으로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약탈과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연방정부차원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립공원서비스부(National Park Service)의 책임 고고학자 Francis P. 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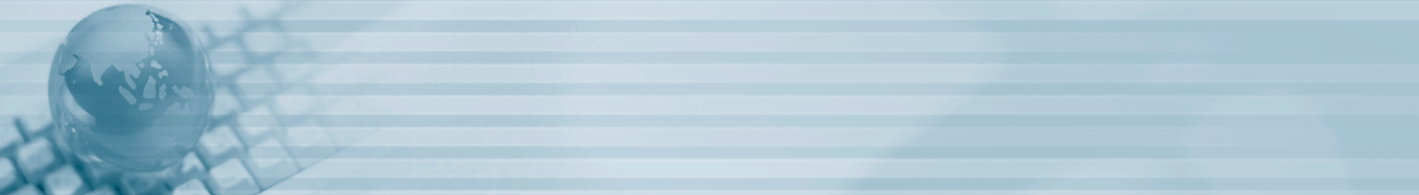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Manamon은 그 어떤 법도 '1906년 유물법' 보다 미국의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보호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미고고학협회는 본 법의 입법과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본 유물법이 미국 유물에 관한 개념정의 부분이 모호하여 실제적인 법강제력이 약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후, 1966년 국가유적보존법과 1979년 고고학적 자원보호법이 추후 제정되게 되었다.

## 2. 1935년 유적지법(Historic Sites Act)

1935년에는 미의회는 유적지법(Historic Sites Act)을 통과시켜, 문화보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내무부장관(Secretary of Interior)으로 하여금 보존행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허락하였다. '역사적 미 건축물 조사(Historic American Building Survey)'는 위 법률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중의 하나로서 당시 미 대공황을 겪고 있던 건축업자, 엔지니어, 조사관(Surveyor)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당시 문화재를 기록, 문서화, 분석 및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유적지법(Historic Sites Act)은 국립공원서비스하의 국립공원을 새로 조정하여, 역사적 장소(Historic Places)의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을 위한 향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



9) <http://www.nps.gov/history/archeology/sites/antiquities/about.htm>.



었다. 비록 유물법(Antiquities Act)과 유적지법(Historic Sites Act)이 보존운동을 위한 중요한 토석(foundation)이 되었지만, 모든 국민의 국가적 인식을 일깨우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3. 1949년 ‘유적보존을 위한 국가신탁법(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Act)’

1949년 10월 26일, 미 트루만 대통령은 ‘유적보존을 위한 국립신탁법(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Act)’에 서명하여, 국가적 중요성 또는 국제적 의미를 갖는 장소, 건축물, 물건의 보존활동에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꾀하였다. 초기에 ‘유적보존을 위한 국립신탁(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은 보존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본 기관은 일반공중의 지역적 보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 방법론 등을 제공하면서, 그 계획과 교육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 4. ‘1966년 국가유적보존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sup>10) 11)</sup>

본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16 U.S.C. 470 - 의회인정과 정책선언 (Congressional finding and declaration of policy)
- 16 U.S.C. 470-1 - 연방정부 정책선언 (Declaration of policy of the Federal Government)
- 16 U.S.C. 470a(a) - 유적지 국가등록, 확대 및 유지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expansion and maintenance)
- 16 U.S.C. 470a(b) - 주 정부 유적 보존 프로그램(State Historic Preservation Programs)
- 16 U.S.C. 470a(c) - 지방정부의 인증 제도(Certification of local governments)
- 16 U.S.C. 470a(d) - 인디언 부족 지원 프로그램 및 규칙확립(Establish program and regulations to assist In-



10) 본 법집행과 관련된 행정명령으로서 ‘미 보존 집행명령(Preserve America Executive Order),’ ‘미 보존 집행명령 자문 가이드(Preserve America Executive Order Advisory Guidelines),’ 1996년에 이루어진 국가의 주요 도시에 있는 역사적 재산에 연방 시설을 설치하는 ‘집행명령 13006(Executive Order 13006),’ 1996년에 이루어진 인디언 신성지역에 관한 ‘집행명령 13007(Executive Order 13007),’ 전통적인 강에 대한 지역공동체 노력을 지원하는 ‘집행명령 13061(Executive Order 13061)’ 등이 있다.

11) 16 U.S.C. 470 to 470x.

dian tribes)

- 16 U.S.C. 470a(e) -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Grants to States)
- 16 U.S.C. 470a(f) - 중개인보상금지 (Prohibition on compensating intervenors)
- 16 U.S.C. 470a(g) - 연방기관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Federal agency responsibilities)
- 16 U.S.C. 470a(h) - 연방재산에 대한 보존 기준(Preservation standards for federally owned properties)
- 16 U.S.C. 470a(i) - 기술자문(Technical advice)
- 16 U.S.C. 470a(j) - 종합적 보존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Develop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preserva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 16 U.S.C. 470b(a) - 16 U.S.C. 470x
- 16 U.S.C. 470f (Section 106) - 역사보존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comment on Federal undertakings)<sup>12)</sup>

‘1966년 국가유적보존법(the National His-

toric Preservation Act)’은 ‘1906년 유물법(Antiquities Act)’을 보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제정된 문화관련 입법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보존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법은 연방기관들로 하여금 연방정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거나 허가된 프로젝트의 영향을 ‘섹션 106조 검토(Section 106 Review)’로 알려진 프로세스를 통하여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본 법하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보존활동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근대사회와 선사적 및 유사적 유적자원이 함께 생산적인 조화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조건(conditions)을 양성해 내는 것이다. 또한, 본 법의 의도 중의 하나는 역사적 자원의 상실에 대해 종종 무관심했던 미연방정부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청지기로 변형시키는데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법은 또한 연방정부가 유적관련 지역에서 일정한 정부차원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때, 문화적 보호를 고려하는 상당히 종합적인 절차규정을 만들어 연방정부의 다른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활동으로부터도 문화재 지역을 보호하고 있다. 본 법은 연방정부와 관련된 경제개발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화훼손으로부터 해당지역을 보호하고 연구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sup>13)</sup> 또한,



12) Section 106을 실행하기 위하여 미 행정부는 36 CFR part 800에서 ‘역사적 재산의 보호(Protection of Historic Properties)’라는 표제하에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고고학적 물건 등을 연방공유지부터 또는 인디언 지역으로부터 옮기거나, 파괴 또는 굴착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불법으로 하였다. 그리고, 해당지역 활동은 교육 또는 과학 기관에게만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오직 관련활동이 고고학적 자원에 대한 지식을 증가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유지에서 채굴된 고고학적 자원은 미정부의 소유가 되고, 인디언 지역에서 채굴된 것은 인디언의 재산이 된다.

1992년 개정된 바와 같이, 본 법의 섹션 110조(Section 110)는 넓은 범위의 연방기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섹션 110조는 연방기관이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역사적 재산에 대한 그들의 사명에 충실하며, 역사적 재산에 대한 주의깊은 고려를 제공하고, 자질을 갖춘 ‘연방보존 공무원(Federal Preservation Officer)’을 임명하여 보존활동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하에서 2003년도에는 유적보존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는 ‘자문 가이드라인(Advisory Guideline)’을 발간하여 연방기관의 문화재 부동산의 관리책임을 지원하였다.<sup>13)</sup>

‘국가유적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기관 및 제

도를 설립하였다. 즉, 유적보존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주 유적보존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유적지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그리고 ‘섹션 106조 검토 프로세스(Section 106 review Process)’ 등이 그것이다.

#### A. ‘유적보존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유적보존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는 매년 네 번 회의를 가지면서, 정부 및 민간부분의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본 자문위원회는 유적보존 문제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연방기관간의 마찰을 조정하는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섹션 106조 검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년동안, 유적보존자문위원회는 섹션 106조하에서의 고고학적 유물을 다루는 여러가지 가이드 문서를 준비해왔다. 최근 대표적인 것이 2007년도에 나온 ‘묘지, 인간생활유적지, 장례물건에 관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 Regarding Treatment of Burial Sites, Human Remains, and Funerary Objects)’이 그것이다.



13) <http://crm.cr.nps.gov/archive/19-7/19-7-5.pdf>.

14) 연방기관들은 적합하고 완전하며 유용한 정보를 자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이 요망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고고학 자원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연방기관과 이해관계인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졌다.

B. ‘유적지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유적지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는 국립공원서비스부의 지도를 받으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지구, 지역, 건물, 구조물 및 물건들의 공식적인 국가목록이다. 이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미국역사나 건축, 고고학, 기술, 문화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 성질이 지역, 지구, 건물, 구조물에 존재하며, 객체의 완결성(지역·디자인·구조설정·재료·감각·제조기술 등)이 다음의 네가지 차원에서 존재하여야 한다.<sup>15)</sup>

첫째, 미국역사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 사건과의 관련성

둘째, 미국의 역사상 의미있는 인물의 삶과의 관련성

셋째, 독특한 성격의 건축 형태, 기간 또는 방법을 나타내거나, 높은 예술적 가치를 소유하거나, 대단한 예술가의 작품을 대표하거나, 의미심장하고 훌륭한 단체를 대표하는 것

넷째, 선사시대 또는 유사시대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산출성

국가등록은 이러한 승인된 재산이 국가지원금, 은행여신 및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자격을 부여한다.

C. ‘주 유적보존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주 유적보존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은 주전체에 걸쳐 역사적 재산의 목록을 만들고, 그러한 재산을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에 추천하며 주전체에 걸친 보존계획을 유지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기관들을 보조, 자문, 교육 등의 지원을 한다. 총 59개의 주 유적보존청이 각 주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 있다.

D. ‘섹션 106조 검토 프로세스 (Section 106 Review Process)’

‘국가유적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의 섹션 106조는 모든 연방적으로 재정지원받는 프로젝트가 유적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토 프로세스(Review Process)’를 의무적으로 거쳐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즉, ‘유적지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자격이 있는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는 ‘검토 프로세스’의 대상이 된다. 비록 본 프로세스는 법률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이해관계자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섹션 106조 검토 프로세스’를 만들게 된 주 목적은 문화재에 대한 잠재적 피해나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아직 ‘유적지 국가등록’에 등록되지



15) <http://www.nps.gov/history/nr/listing.htm>.





않은 장소라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등록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장소는 등록된 유적지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역사문화와 관련가능성이 있는 많은 장소가 본 섹션 106조 검토 프로세스에 의해 사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방대한 미 국토에서 유적과 관련성 있는 공유지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일일이 모든 장소가 ‘유적지 국가등록’으로 지정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본 검토 프로세스는 미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선제적 장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 프로세스가 없었다면 많은 문화역사적 재산이 훼손되었을 것이다.

검토 프로세스 결과, 국가유적보존법상, 문화재(특히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에 등록된 문화재)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기관은 반드시 대안을 모색하도록 강제된다. 만약에 해당활동이 문화재에 역작용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믿어지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문서화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역작용이 예상되면, 해당 기관은 지역 주 유적 보존청과 함께 유적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활동을 검토하고 및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본 법의 통과로 미의회는 미역사적 유적유물 보존에 있어서 연방정부를 완전한 파트너로 만

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의 각 도시와 지역에 문화재 보호관련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 5. ‘1979년 고고학적 자원법 (Archaeological Resources Act)’<sup>16)</sup>

본 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16 U.S.C. 470aa. 의회사실인정과 목표선언(Congressional findings and declaration of purpose)
- 16 U.S.C. 470bb. 정의(Definitions)
- 16 U.S.C. 470cc 굴착과 장소이동(ex-cavation and removal)
- 16 U.S.C. 470dd 고고학적 자원의 보관 (custody of archaeological resources)
- 16 U.S.C. 470ee 금지 행위와 형사벌금 (Prohibited acts and criminal penalties)
- 16 U.S.C. 470gg 강제(Enforcement)
- 16 U.S.C. 470hh 고고학적 자원의 성격과 장소에 관한 정보의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concerning nature and location of archaeological resources)



16) 16 U.S.C. 470aa to 470mm.

- 16 U.S.C. 470ii 관련 규칙; 정부간 협력 (Rules and regulations;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 16 U.S.C. 470jj 사인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private individuals)
- 16 U.S.C. 470kk 적용배제조항(Savings provisions)
- 16 U.S.C. 470ll 의회 연별보고(Annual report to Congress)
- 16 U.S.C. 470mm 토지조사; 위반신고 (Surveying of lands; reporting of violations)

미국의회는 고고학적 자원(archaeological resources)이 방치되어 위협에 처해있다고 판단하여 1979년 ‘고고학적 자원법(Archaeological Resources Act of 1979)’을 제정하였다. 본 법은 고고학적 자원은 대체될 수 없는 국가적 유산의 일부라고 선언하고,<sup>17)</sup> 본 법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위하여 고고학적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8)</sup>

보호대상이 되는 고고학적 자원은 최소 100년 이상된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과거 인간 삶의 모든 물질적 유물을 포함한다.<sup>19)</sup> 예를 들어 도자기류, 바구니류, 무기류, 도구류, 건축물, 바위에 그린 그림, 그리고 동굴을 포함한다.<sup>20)</sup> 본 법은 공유지(public land) 및 인디언생활지역에 있는 고고학적 유물을 보호한다. 공유지(public land)란 미정부에 의해 소유된 모든 토지를 포함하되<sup>21)</sup> 대륙붕 밖의 지역은 배제한다.<sup>22)</sup> 본 법은 연방기관들이 내무부장관(Secretary of the Interior)에게 모든 댐 건축공사를 미리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고고학적 자원이 발견되면 연방기관은 그들은 복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직접적인 또는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받는 활동이 선사적, 유사적, 또는 고고학적 데이터에 복구불가능한 해(harm)를 입히는 경우에 본 법은 적용된다. 본법은 절도나 훼손행위에 대해서 50만불의 벌금 그리고 최대 5년의 금고형이 부과된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은 관계된 고고학적 자원의 고고학적 또는 상업적 가치 그리고 관련된 고고학적 지역과 자원의 복구 및 보수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7) 16 U.S.C. 470aa(a)(1).

18) 16 U.S.C. 470aa(b).

19) 16 U.S.C. 470bb(1).

20) 16 U.S.C. 470ee(g).

21) 16 U.S.C. 470bb(3).

22) Klein v. Wrecked & Unidentified Sailing Vessel, 568 F. Supp. 1562(S.D. Fla. 1983), aff d, 758 F.2d 1511(11th Cir. 1985).



## 6. 기타 문화재보호입법

한편, 해양 고고유물에 대한 보호는 ‘해양 보호, 탐색 및 보호구역 법(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sup>23)</sup> 유타 주도 ‘1973년 유타 주 유물법(Utah State Antiquities Act)’을 제정하였는데, 1906년 연방법의 그것과 유사하다. ‘1990년 미 원주민 묘지보호 및 송환법(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of 1990)’은 미원주민 문화재 품목, 생활유적지, 그리고 관련 장례 물건들의 소유권과 통제를 미원주민에게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1987년 바다유기 파손선 법(Abandoned Shipwreck Act of 1987),’ 도난당한 문화적 재산을 회복하는 것에 관련된 ‘국가도난 재산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sup>24)</sup> 등이 있다. 한편, 전쟁이나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리버코드(Liber Code)가 있다. 리버 코드(Lieber Code)은 ‘전장에서 미정부군을 위한 지침(Instruction for the Government of Arm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의 약칭으로서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하여 일반 명령 100호(General Order No. 100)로서 내려진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적

문서이다. 리버 코드 35는 전통적인 예술품, 도서관, 과학적 수집 또는 귀중한 전통적 도구 등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평화시 궁극적인 소유권이 결정될 때까지 정복 주정부 또는 국가가 압수 및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적 문화재는 오직 전쟁 필요에 의해서만 압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리버 코드는 무력충돌로 위협에 처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후속 협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25)</sup>

## IV. 문화재 보호 주요 국제협약

### 1. 세가지 주요 국제협약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3년 4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이후 이라크 시민들은 문화재 약탈에 관여하여 정부건물, 도서관, 학교, 수천개의 고고학적 문화재 지역들이 약탈의 대상이 되고 국립도서관은 화재로 소멸되기에 이르렀다. 이라크 국립박물관은 1만 3천가지의 품목을 도난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제 기관들, 국가, 유엔의 유네스코(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그리고 미국의 협력을 통하여 대략 5천 200여점을 6개의 국가에서 되찾게 되었다.<sup>26)</sup> 이러한 최근의 국제적



23) 16 U.S.C.A. §§ 1401 to 1445. 관련 판례로는 United States v. Fisher, 977 F. Supp. 1193 (S.D. Fla. 1997).

24) 18 U.S.C. 2314, 2315.

25) Andrea Cunning,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property in times of war & peace, 11 Tulsa J. Comp. & int'l L. 211, 215 (2003).

경험은 문화적 재산을 무력충돌기간 동안 보호하고 도난된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이나 협약의 중요성을 잘 상기시켜준다 하겠다. 현재 이러한 국제적 협약의 예로써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1954년 헤이그 협약(The 1954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sup>27)</sup> '문화재의 불법적 수입, 수출, 및 그 양도를 금지하고 예방하는 수단에 관한 1970년 유네스코 협약(The 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sup>28)</sup> 그리고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출된 문화재에 관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The 1995 UNIDROIT Conventio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sup>29)</sup> 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영국과 더불어 헤이그 협약이 유사시 그들의 핵무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sup>30)</sup>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의 성격을 벗어나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이유<sup>31)</sup> 등으로 '1954년 헤이그 협약'에 비준을 거부하여 왔다. 단, 미국은 '1970년 유네스코 협약'에 1972년 수정을 가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였고 1983년 입법부를 통과하였다. 본 유네스코 협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국의회는 '문화재 협약 이행법(The Convention of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CPIA))'을 1983년 1월 12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 2. 1954년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제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는 엄청난 규모의 문화재 파괴와 약탈을 체험하고 결국 1954년 헤이그 협약이 탄생하게 되었다. 헤이그 협약은 근대 전쟁에서 편만했던 문화재 절도행위와 파괴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이를 막는데 그



26) Zelig, supra note 1, at 289.

27)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637&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637&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현재까지 118개국이 조약에 비준(Ratification) 또는 승인(Accession) 한 상태에 있으며, 대한민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2000년 1월 5일 승인(Accession)을 하였고, 일본은 2007년 9월 10일 비준(Ratification)을 하였다.

28)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3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총 115개국이 가입국으로 있으며, 한국은 1983년 2월 14일, 중국은 1989년 11월 28일에, 일본은 2002년 9월 9일에 각각 본 협약에 승낙(Acceptance)한 상태에 있다.

29) <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1995culturalproperty/main.htm>. 총 28개국인 체약국이며, 중국은 1997년 5월 7일 비준(Ratification) 또는 승인(Accession)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 Jennifer Lehman, The Continued struggle with stolen cultural property: the Hague Convention, The UNESCO Convention, and the UNIDROIT Draft Convention, 14 Ariz. J. Int'l & Comp. L. 527, 534 (1997).

31) Cunning, supra note 28, at 220.



목적을 두고 있다. 1954년 헤이그 협약은 제1조에서 세계 최초로 ‘문화재(Cultural Propert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 “㉔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큰 중요성을 지닌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서,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조각건축물, 예술적 기념물 또는 역사적 기념물, 고고학적 장소, 전반적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가진 다수의 건물군(Group of buildings), 예술작품, 원고, 서책,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물건, 과학적 수집물, 수집된 중요한 서적들이나 기록보관소, 또는 위에서 열거된 재산을 복사한 수집,”<sup>32)</sup> “㉕ 주 목적이 위 ㉔에서 정의된 이동가능한 문화적 재산을 보존하거나 전시하는 건물들로서, 박물관, 대형 도서관, 기록보관소, 전시상의 은닉소,”<sup>33)</sup> “㉖ 위 a와 b에서 정의된 대규모의 문화재들을 포함한 센터.”<sup>34)</sup>

1954년 헤이그 협약은 목록시스템(inventory system)을 도입함으로써 2차대전 중 나찌에 의해 도난당했던 물품을 찾는데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sup>35)</sup>

### 3. 1970년 유네스코 협약(UNESCO Convention)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국가적 보물의 국제적 밀수행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문화적 재산보호에 관한 주된 국제적 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본 협약은 또한 고고학적 그리고 문화적 자원의 약탈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전세계적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sup>36)</sup> 1954년 헤이그 협약과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공통점은 체약국이 문화재라고 간주하는 물품들을 목록으로 만들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1954년 헤이그 협약이 무력충돌시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평화시의 전반적인 사적인 행위(private conduct)로부터의 보호를 다루고 있다.<sup>37)</sup>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를 수출하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해당 수출품이 완전히 승인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승인인증서(authorized certificates)를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sup>38)</sup> 또한 본 협약의 제 7조 (b)항도 다른 체약국에서 도난당한 문화재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네스코 협약이 문화재의 불법 밀수를 줄이는 상당한



32) The 1954 Hague Convention, art. I a.

33) The 1954 Hague Convention, art. I b.

34) The 1954 Hague Convention, art. I c.

35) Cuning, supra note 28, at 227.

36) Zelig, supra note 1, at 301.

37) Zelig, supra note 1, at 302.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 체약국마다 법적 구제수단의 통일성 결여로 인하여 법적 강제 의 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sup>39)</sup> 이는 협약상 체약국은 문화재에 관하여 자국의 실체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 4.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UNIDROIT Convention)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은 체약국간의 문화재의 반환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공통된 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 기조는 도난당한 문화재의 보유자는 물건을 본 소유권자(private owner)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40)</sup> 1970년 유네스코 협약상 오직 체약국가만이 문화재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본 유니드로와 협약은 일반 사인(private individuals)까지도 반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sup>41)</sup> 더 나아가 도품의 선의취득자도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며, 단지 선의를 증명할 수 있는 한, 물건의 대가를 얻어낼 수 있다.<sup>42)</sup>

따라서 유니드로와 협약은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까지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공통의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불법적 밀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sup>43)</sup>

#### 5. '문화재 협약 이행법(The Convention of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sup>44)</sup>

미국은 '1970년 유네스코 협약'에 1972년 수정을 가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였고 1983년 입법부를 통과하였다. 본 유네스코 협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국의회는 '문화재 협약 이행법(The Convention of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을 1983년 1월 12일 통과시켰다.<sup>45)</sup>

## V. 문화재 보호 주요 행정기관

### 1. 미국무성

미국무성은 1983년 제정된 '문화재 협약 이행법(the 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Im-



38) The 1970 UNESCO Convention art. 6 and 7.

39) Zelig, supra note 1, at 304.

40)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Preamble.

41)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art. 2 and 8.

42)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art. 4(5) and (1).

43) Zelig, supra note 1, at 306-7.

44) 19 U.S.C. 2601 to 2613.

45) Pub. L. 97-446.



## 제14장 문화재 협약

### (CHAPTER 14--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Sec.

19 U.S.C. 2601. 정의(Definitions).

19 U.S.C. 2602. 협약 제9조에 대한 수행 동의(Agreements to implement Article 9 of the convention).

19 U.S.C. 2603. 수입제한조치의 긴급실시(Emergency implementation of import restrictions).

19 U.S.C. 2604. 합의 또는 긴급조치에 의해 구제된 물품의 위임(Designation of materials covered by agreements or emergency actions).

19 U.S.C. 2605. 문화재 자문위원회(Cultur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

19 U.S.C. 2606. 수입제한(Import restrictions).

19 U.S.C. 2607. 도난 문화재(Stolen cultural property).

19 U.S.C. 2608. 본 장의 적용을 받는 물건과 품목의 일시적 처분(Temporary disposition of materials and articles subject to this chapter).

19 U.S.C. 2609. 압류 및 몰수(Seizure and forfeiture).

19 U.S.C. 2610. 증거요구(Evidentiary requirements).

19 U.S.C. 2611. 본장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정 물건 및 품목(Certain material and articles exempt from this chapter).

19 U.S.C. 2612. 규칙(Regulations).

19 U.S.C. 2613. 강제(Enforcement).

plementation Act)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sup>46)</sup> 이는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로서 본 법에 의하여 미국무성은 고고학적 또는 민족적 예술작품의 약탈로 국가적 문화유산이 위협에 처한 타국가들이 제안한 수입제한 요청을 받아들인다. 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문화재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고 미국무성에 일정한 조치를 제안하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 아래서 미국무성은 그 요청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고 요청국가와 문화재 협정을 맺을 수 있다.

## 2. 국립공원서비스부

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산하의 국립공원서비스부(National Park Service)는 미인디언부족, 각주,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역사적 유물소유자들 등과 함께 보존행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47)</sup> 특히 국립공원서비스 소속 고고학자, 건축가, 큐레이터(Curator), 역사학자 및 기타 역사적 자원 전문가들은 미국의 거의 400여 개에 달하는 국립지정지역에서 역사적인 유물의 보존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1916년에는 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가 ‘국립공원서비스부(National Park Service)’을 창설함으로써, 국가적 기념물을 포함한 공공 공간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최초의 연방기관을 두게 되었다. 지금까지 미 국립공원서비스부는 엄청난 부지에 달하는 토지를 획득하여 자연적 경관미를 가진 국립공원과 수많은 다양한 역사적 건축물, 기념물 및 지역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립공원서비스부는 1억1천5백만개의 박물관 문화재와 기록 보관소, 6만6천개의 고고학적 장소, 2만7천여개의 역사적 건물을 국립공원안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 billion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보존행위에 지출하였다.



46) <http://exchanges.state.gov/culprop/>.

47) <http://www.nps.gov/history/nr/listing.htm>.

48) <http://www.preservationnation.org/about-us/>.

## 3. 미 고고학 협회

‘미 고고학 협회(The Archaeological Institute of America)’는 북미에서 고고학계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큰 조직으로서 본 협회는 1879년 비영리기구로서 설립되고 1906년 미의회에 의해서 인가를 받았다. 오늘날 본 협회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해외에서 25만명의 회원과 104개의 조직에 속한 가입자들을 가지고 있다. 본 기관은 전문적인 고고학자, 학생, 그리고 모든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고고학 협회는 고고학적 조사를 증진시키고, 인간의 과거 생활사에 관한 물질적 기록에 관한 공중 이해를 높이고 있다.

## 4. ‘유적보존을 위한 국가신탁(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본 기관은 1949년 설립되어 미국의 다양한 역사지역(특히,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대체불가능한 지역)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리더쉽, 교육, 옹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역사지 보존 및 활성화에 초점을 둔 기관이다.<sup>48)</sup>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6개의 지역 사무소, 29개의 역사지에서 본 기관은 미 전역 50개 주에서 총 27만명의 회원과 수천개의 보존단체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VI. 문화재 방재 대책

화재는 문화재 시설안에서 문화재 훼손의 가장 큰 이유이다. 10여년 전 미국에서도 평균적으로 매년 100여개 이상의 박물관들이 화재가 발생했고, 2백여개이상의 도서관 화재로 손실을 겪었다. 박물관화재는 전기시스템, 방화, 난방시설은 3가지 주요 화재원인으로 여겨져왔다.

미국의 문화재 방재관련 기관으로서 ‘보존기술 및 훈련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Preservation Technology & Training)’와 ‘국가화재보호협회(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주목할 만하다.

### 1. ‘보존기술 및 훈련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Preservation Technology & Training)’

미 의회가 ‘1992년 유적보존법 개정안(the Historic Preservation Act Amendments of 1992)’을 통과시키면서 미 정부는 ‘보존기술 및 훈련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Preservation Technology & Training)’를 ‘미 국립공원 서비스부(National Park Service)’ 하에서 설립하고, 더불어 본 국립센터 자문위원회,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까지 설립하게 되었다. 본 기관은 국가문화자원 보존활동을 증진시키고 향상시킬 국가적

필요가 커지고, 미 기술평가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의 미 의회보고서가 국가 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조하면서 얻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국립센터는 미 전역에 걸쳐 선사적 및 유사적 자원의 해석, 보존 및 보전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분배하는 일을 수행한다. 본 기관은 미국의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존 전문가에게 기술(technology)에 기초한 연구 및 훈련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본 기관은 과학과 기술(Science and Technology)을 역사 보존 활동에 적용하고 그 적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고고학, 건축, 경관 건축 그리고 자연자원 보존의 영역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 기관은 훈련, 교육, 연구, 기술이전 및 파트너쉽 등을 통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귀중한 문화적 자원의 대다수가 본 ‘보존기술 및 훈련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Preservation Technology & Training)’의 연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sup>49)</sup> 따라서, 본 기관은 국가의 보존 및 보전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미국의 문화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49) <http://www.ncptt.nps.gov/Default.aspx>.

## 2. '국가화재보호협회(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국가화재보호협회(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는 1896년에 설립된 독립된 비영리 기관으로서 공공안전에 관한 권위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선도기관이라 할 수 있다. 본 협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화재와 기타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가장 핵심사업의 하나는 화재방재를 위해 모델 법률 또는 코드(codes) 및 기준(standard)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술발달에 따라 향상시킬 뿐 아니라, 관련 연구,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협회의 300여개에 달하는 모델법과 기준은 화재관련 미국내의 모든 건축, 프로세스, 서비스, 디자인, 설치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 협회의 '코드개발프로세스(codedevelopment process)'는 '미국 국가기준위(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인증( accreditation)을 받기에 이르렀다. 협회코드개발은 거의 다양한 전문가적 배경을 가진 6,000여명의 자원에 의해 운영되며 코드개발과정에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제안이 격려되어 모든 각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한 모델법 또는 모델규칙의 개발이 가능케 된다. 본 협회에서 만든 모델 코드는 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각 주정부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채택되어 그들의 법이 되

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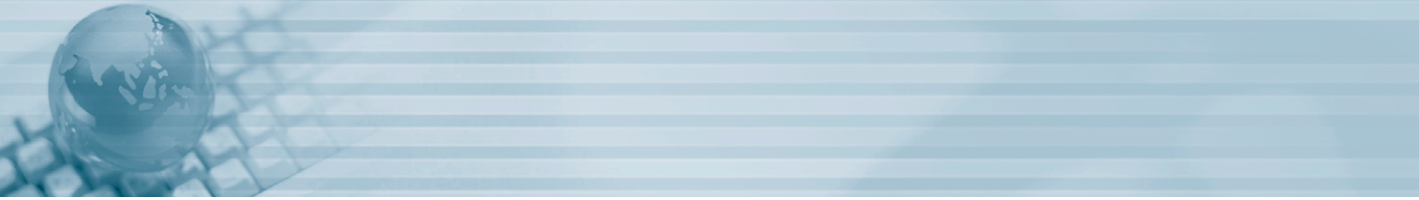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문화재 방재와 관련해서는 '국가화재보호협회 코드 909조(NFPA 909) 문화적 자원 재산의 보호코드-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경배장소'가 있다.<sup>50)</sup> 코드 909는 건축, 경고알람(alarm), 진압 시스템, 적합한 기구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과 화재발생시 그 효과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운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용되어야 하는 스프링클러(sprinklers)의 종류, 화재리스크 평가에 관한 요구사항, 방화댐퍼(fire dampers)에 관한 요구사항, 비상조치계획, 화재안전조사 및 일반조사와 관련된 필수업무에 관한 체크리스트 등이 코드 909에 포함되어 있다.

## Ⅷ.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6년 국가유적보존법상 '섹션 106조 검토 프로세스'는 참고할 만한 아주 효율적인 문화보호장치라 여겨진다. 또한 국립공원서비스 부하에서의 문화보존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원을 하는 국립지원센터 또한 효율적 제도라 사료된다. 한편,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한 시점에서 문화재 보호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간의 문화재 보호법의 간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각



50) <http://www.nfpa.org/aboutthecodes/AboutTheCodes.asp?DocNum=909>. 코드 NFPA 909은 본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2005년 개정판이 있다.



국가가 문화재에 관한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국의 법의 충돌, 불일치, 또는 혼돈을 초래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의 시각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밀수자들에게 좀 더 느슨한 법률을 가진 국가들을 이용하며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sup>51)</sup>

오늘날 미국의 문화재보호에 있어서 보존의 경제적 이익이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보존노력은 미 국가경제에 있어서 많은 직업을 창출해 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적 차원의 보존정책은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관광산업 등을 창출해내고,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해당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미 문화재보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미국의 입법은 대

중의 인식수준을 상승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과 지식을 일반대중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진호**

(미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 미국 변호사)



51) Zelig, supra note 1, at 298 ft. 55.